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 및 신청서 양식

①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 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최대 2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의 심각 단계에서는 교외체험학습 유형에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 교외체험학습 유형 : 가족동반여행, 친척집 방문, 답사·견학 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

※ 5일 이상 연속 사용 시 주 1회 이상 직접 영상 통화 등 학생의 안전과 건강 확인

② 보호자가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은 아니며 학교장은 현장 체험학습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체험학습의 목적, 유형, 기간, 내용 등이 학교의 규칙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학생 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상업적인 내용의 체험학습이라 판단될 경우 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학교의 연간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현지 교통사정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기간을 초과한 경우는 보고서 제출 후 「학교장」의 최종 판단에 따라 「기타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이때 학교장 내부결재 필요)

④ 학교장(전결규정 포함)의 결재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담임교사는 허가 여부, 출석인정 일수 등을 체험학습 전에 보호자에게 서면(또는 문자) 통보한 후 체험학습을 실시하도록 안내한다.

⑤ 체험학습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은 제외하며 횟수는 제한이 없으나 연간 최대 일수에서 인정한다.

⑥ 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반드시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위임장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며 보호자가 신청한 체험학습 신청서로 대신함)

⑦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에는 보호자와 담당교사 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사안(사고) 발생 시 보호자는 담당 교사에게 연락을 하도록 안내한다.

⑧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는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하며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기타 증빙 서류는 취합하여 5년간 원본 보관한다.

(국외의 경우 날짜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비행기 표, 선박티켓 등) 사본을 제출한다.)

⑨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시간이 **4시간 미만일 경우 반일을 허가한다.**
(단, 반일은 당일 수업에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

※ 반일을 2회 사용한 경우 1일로 간주함.

※ 당일 수업에 참여하였더라도 교외체험학습이 4시간 이상인 경우 1일로 간주함

※ 당일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교외체험학습 시간은 1일로 간주함.

※ 시간 기준은 60분(1시간)이 아닌 학교급별 수업시수(45분)를 의미함.

⑩ 가정학습 신청 시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곳으로 이동 체류는 허용되지 않는다.

⑪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보호자나 학생에게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을 강요하지 않는다.

⑫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절차

단계	주체	내 용	비고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보호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사전에 보호자가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양식은 학교 홈페이지 탑재되어 있음. 출력이 어려울 경우 담임교사에게 사전 요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허가 여부 통보	담임교사	체험학습 출발 전까지 보호자에게 체험학습 허가 통보서를 서면(또는 문자)으로 통보	
현장체험학습 실시	인솔자 및 학생	목적에 맞는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실시	
보고서	학생 및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결과 보고서 제출	홈페이지

제출	보호자	종료 후 (5)일 이내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미제출시 미인정 결석 으로 처리함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 탑재되어 있음. 출력이 어려울 경우 담임에게 사전 요청)	공지사항
----	-----	--	------

제34조 (체험학습 불허 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들은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① 시험기간(정기고사, 학업성취도평가, 기초학력진단평가 등)
- ② 성적 이의 신청기간(2일),
- ③ 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학원수강, 상급학교 입시를 위한 준비와 훈련, 해외여학연수, 미인정 유학 등의 미인정 결석 처리사안)
- ④ 학교행사 기간(전일제 현장체험학습, 체육대회, 청소년 어울마당 등)

<서식 1>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신청서				
성명	학년 반 번			
본교 출석인정기간 연간(20)일	신청 기간	1일 기준	20 년 월 일 ~ 월 일	
		반일 기준 (4시간 미만)	날짜 시간	20 년 월 일 시 분~ 시 분
	우리 학교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세부 규칙 및 불허기간 확인 ※ 필요시 담임교사와의 사전 협의 또는 문의			(○ , ×)
	학습형태			
목적지				
보호자명				
인솔자명				
목 적				
<일자별 계획 기록>				
교외체험 학습계획				
학생안전				
교외체험학습이 5일 이상 연속될 경우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주 1회 이상 학생이 담임(담당)교사와 <u>직접 통화</u> 하겠습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위와 같이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보호자 : (인) 학생 : (인)				
문정중학교장 귀하				

----- (이하 담임 작성)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통보서

성명	학년 반			제 학년 반 번
본교 출석 인정 기간 연간 (20)일	신청 기간	1일 기준	20 년 월 일 ~ 월 일() 일간	
		반일 기준 (4시간 미만)	20 년 월 일 시 분 ~ 시 분(시간)	
금회까지 누적 사용 기간 ()일				
위와 같이 허가 처리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 . . 문정중학교 ()학년 ()반 담임교사 : (인) 보호자님 귀하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통보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합니다.

* 시험기간(정기고사, 학업성취도평가, 기초학력진단평가 등), 성적 이의신청기간(2일), 학교행사 기간(전일제 현장체험학습, 체육대회, 청소년 어울마당 등), 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학원수강, 상급학교 입시를 위한 준비와 훈련, 해외어학연수, 미인정 유학 등의 미인정 결석 처리사안) 등의 체험학습은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합니다.

* 본교 출석인정기간(연간20일) 초과시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기간에서 제외하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에는 보호자와 담임(담당)교사 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사안(사고) 발생 시 보호자는 담임(담당)교사에게 연락을 하도록 합니다.

* 교외체험학습이 5일 이상 연속될 경우 주1회 이상 학생이 담임(담당)교사와 직접 통화하여 건강과 안전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미이행의 경우 시·군·구 아동복지과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식 2>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결과보고서

* 보고서 제출 기한: 체험학습 종료 후 5일 이내

담임	부장	교감

성명	학년 반	학년 반 번
기간	1일 기준	20 년 월 일 ~ 월 일 () 일간 (신청서의 체험학습 기간과 일치하게 기재)
	반일 기준 (4시간 미만)	20 년 월 일 00:00 ~ 00:00
목적지 및 동반자	목적지	
	보호자(동반자)	
학습형태	◦ 가족동반여행() ◦ 친·인척 방문() ◦ 답사·견학 활동() ◦ 체험활동() ◦ 기타()	
제 목		

* 각 일정별로 느낀 점, 배운 점 등을 글, 그림 등으로 학생이 직접 기록합니다. (일자별 기록, 사진 등은 뒷면 부착)

* 국외의 경우 날짜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비행기표, 선박티켓 등) 사본을 제출합니다.

위와 같이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보호자 : (인)
학생 : (인)

문정중학교장 귀하

* 체험 장소에서 찍은 사진(학생 및 인솔자 포함된 장면), 관람 티켓, 항공권 사본 등을 뒷장에 첨부할 것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결과보고서(별지)